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13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최수진 · 고동진 · 박충권
김예지 · 이상휘 · 구자근
김정재 · 김소희 · 김미애
최은석 · 이주영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6항 및 제64조제3항).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제6항 본문 중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생 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 · 관합동조사단에</u>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 ----- ----- ----- ----- <u>소속</u> ----- ----- ----- ----- -. ----- ----- ----- ----- -----.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② (생 략)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u>정보통신</u>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항 및</u>

<u>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u>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u>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u> ----- ----- ----- ----- ----- -----.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